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審查報告書

1992. 7.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2. 6. 5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'92. 6. 19

다. 상정일자 : 제11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폐회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('92. 7. 2) 상정
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金榮俊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일부직렬, 직류 및 정원을 조정코자 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능직 정원중 8등급 사무보조원(조무) 2명, 9등급 사무보조원(조무) 1명, 10등급 사무보조원(조무) 2명을 각각 사무보조원(필기) 직류로 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金熙中)

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('91. 12. 31 대통령령 제13532호)으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가 조정되었는데 이를 보면, "사무보조직렬중 조무 및 필기직류"가 "사무보조직렬에 필기직류, 조무직렬에 조무직류"로 조정됨에 따라 영풍포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례(안)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바 우리의회 사무국 기능직공무원중 "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보조)"가 "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"로 "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"가 "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"로, "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"가 "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"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.

기능직 공무원의 지급 및 정년표

현		행		개				정(안)							
직	군	직	렬	직	류	정	년	직	군	직	렬	직	류	정	년
사무보조	사무보조	조	무	58	사무보조	58		사무보조	필	기	58	조	무	조	무
		필	기					조	무	조				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대로 가결

(재적의원 11명)

- 출 석 10명
- 찬 성 10명
- 반 대 없음)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6월 5일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일부직렬, 직류 및 정원을 조정코자 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기능직 정원중 8등급 사무보조원(조무) 2명, 9등급 사무보조원(조무) 1명, 10등급 사무보조원(조무) 2명을 각각 사무보조원(필기) 직류로 개정함.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

4. 참고사항

- 신·구 정원표 — 별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

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별표1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 기능직 내용중 “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 2”를 “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”로 하고,
“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표결사 1”을 “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표결사 1”로 하며,
“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 2”를 “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1]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職員定員表(舊)

○ 별 정 직

- 비 서(7급상당) 1
- 비 서(9급상당) 1

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

-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

○ 일 반 직

- 지방서기관 1
- 지방행정주사 3
- 지방행정주사보 3
- 지방행정서기 3
- 지방행정서기보 2

○ 기 능 직

-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 2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 2
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표결사 1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2
-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2
- 10등급 지방운전원 2

[별 표1]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職員定員表(新)

○ 별 정 직

○ 비 서(7급상당) 1

○ 비 서(9급상당) 1

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

○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

○ 일 반 직

○ 지방서기관 1

○ 지방행정주사 3

○ 지방행정주사보 3

○ 지방행정서기 3

○ 지방행정서기보 2

○ 기 능 직

○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

○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

○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표절사 1

○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2

○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2

○ 10등급 지방운전원 2